

2020년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2020. 10. 17.(토) 시행하는 2020년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자: 2020. 10. 17.(토)

2. 시험시간

구 분	응시직렬(급)별	시험과목수	수험생 입실시간	시험시간(분)
7급 공개경쟁	감사(감사)7급	7개 과목	09:20까지	10:00 ~ 12:20 (140분)
9급 고졸자 경력경쟁	농업(일반농업)9급	3개 과목	09:20까지	10:00 ~ 11:00 (60분)
	해양수산(일반수산)9급			
	보건(보건)9급			
	시설(일반토목)9급			

3. 시험장소: 한라중학교

응시직렬(급)별	임용 예정 기관	응시번호	시 험 장 소	
			시 험 장	소 재 지
감사(감사)7급	도	19710001~19710180	한라중학교	제주시 과원북2길 24 ☎766-3100 * 약도 붙임1 참조
농업(일반농업)9급	제주시	33920001~33920005		
해양수산(일반수산)9급	서귀포시	65930001~65930004		
보건(보건)9급	서귀포시	42930001~42930005		
시설(일반토목)9급	제주시	52920001~52920006		

- ※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필기시험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출력(2020.9.28.부터 출력가능)

4. 응시자 준수사항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사항』

- 가. 시험장은 필기시험 전·후로 ‘코로나19 방역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응시자는 감염예방을 위한 행동수칙(붙임2)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응시가 불가하며,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 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의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하거나 제한 될 수 있으니, 개인 건강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감염병예방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내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에 한함)

- 사전 신청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재채용팀 유선신청(064-710-6223~6225)
- 사전 신청 기간 : 2020. 10. 8.(목) 09:00 ~ 10.15.(목) 18:00까지

- 다. 모든 응시자는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입실하며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안전한 시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시험장 입실 시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1.5m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바. 기침·발열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의료반 문진 후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 가.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미리 공고된 시험장 주 출입문에 부착된 시험실배치도를 확인하고 09:20까지 본인 수험번호에 해당하는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응시자에 한해 07:40부터 시험실을 개방합니다.
 -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09:50분경)에는 수험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나.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 공무원증, 재외도민증,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라. 시험시작 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배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섭취, 수분 과다섭취 등 컨디션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 단, 감사(감사)7급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는 화장실 사용을 허용합니다.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안내문 참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안내】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고졸9급 화장실 사용불가)

- 시험 중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확인과 답안 작성 등 시험진행 상 시험시작 후 30분 이후 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만 1회에 한하여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화장실 사용 전 입구에서 휴대전화, 부정자료 등 소지에 대해 검색하며, 화장실 사용 전·후 화장실 내부에 기재사항 등 이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 시험과 관련된 부정자료 소지, 화장실내에서 시험관련 기재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한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화장실 사용 시 이동시간과 소지품 검색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다만,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됨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 또는 기재사항을 추가 작성하거나, 답안제출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자.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에서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시험실 내 시계는 실제 시험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계산기능 또는 메모리 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타. 인사혁신처에서 위탁하여 출제되는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필기시험 문제 중 우리도에서 자체 출제한 다음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시험 종료 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문제책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미공개대상 시험과목(자체출제 8개 과목)

- 감사7급: 회계학, 경영학

- 고졸9급: 일반농업9급(농업·생산환경), 일반수산9급(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보건9급(환경보건, 공중보건)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정답 이의 제기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답 이의제기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안내

○ 필기시험 정답 이의제기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답가안 공개: 2020. 10. 17.(토) 14:00

- 이의제기기간: 2020. 10. 17.(토) 18:00 ~ 10. 20.(화) 18:00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답 이의제기

- 최종정답 공개: 2020. 10. 26.(월) 18:00

5.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제6호 위반행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 4호 위반행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정하여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시험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지에 답안 또는 기타 기재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행위

6.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20. 11. 13.(금)에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일자리·채용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합격자인 경우는 최종 합격자 발표 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합격/성적조회”에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7. 가산점 표기방식 안내

○ 가산점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2020.10.16. 24:00)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https://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

- ▼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실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휴식시간 등에도 다른 수험생과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험생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